

규 칙

제25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순천시의회 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순천시의회 의장 허유인

2021년 9월 7일

순천시의회 규칙 제47호

붙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의 제목 “(5분 자유발언)” 을 “(의원 자유발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5분이내의 발언” 중 “5분” 을 “10분” 이내의 발언으로, (이하 “5분 자유발언” 이라 한다)를 (이하 “의원 자유발언” 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5분” 을 “의원”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7조의2(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회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제37조의2(의원 자유발언) ① --- ----- ----- ----- ----- ----- ----- 10분이내의 발언(이하 “의원 --- -----.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취지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개의 직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의원 ----- ----- ----- -----.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